

고 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8-123호

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42(2002.2.20)호로 청담·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변경)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69(2005.12.1.)호로 청담·도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이 수립되어 2016.3.15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6-150(2016.11.4.)호로 사업시행인가, 강남구고시 제2017-117호(2017.9.1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9월 7일
강 남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(1)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(2) 명칭 :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(1) 위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49 (삼성동, 상아아파트2차)
- (2) 구역면적 : 27,721.8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(1) 성명 :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: 홍승권)
- (2)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19길 14, 402호 (삼성동, 주호빌딩)

(3)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8. 9. 7.
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
(1) 근린생활시설 조합원 분양기준 배정 계획 변경

기정 관리처분계획	변경 관리처분계획(안)
2. 근린생활시설의 조합원 분양기준 및 배정 ①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은 근린생활시설 종후자산 평가액 중 층별층액의 범위 내에서 점포 구획별로 가격을 책정하고, 조합원 중 근린생활시설 분양신청자를 대상으로 희망 층별 점포를 신청받아 분양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망 점포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배정하며, 탈락자는 후순위 신청 또는 잔여 점포구획을 배정한다.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<신설>	2. 근린생활시설의 조합원 분양기준 및 배정 ①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은 근린생활시설 종후자산 평가액 중 층별층액의 범위 내에서 점포 구획별로 가격을 책정하고, 조합원 중 근린생활시설 분양신청자를 대상으로 희망 층별 점포를 신청받아 분양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망 점포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배정하며, 탈락자는 후순위 신청 또는 잔여 점포구획을 배정한다.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층호수의 배정은 소유자의 종전 점포의 층수와 동일한 층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, 경합으로 인해 동일한 층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신청한 층에 배정한다.

(2) 변경사유 : 상가소유 조합원의 종전 상가시설의 층수와 동일 한 층수를 배정함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명확히 규정

5.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위해 강남구청 주택사업과(☎ 02-3423-6092) 및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(☎ 02-543-7076)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 끝.